

- 제30조(입소계약,계약만료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) ① 입소자의 **계약기간**은 장기요양보험 법상의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계약만료시에는 계약을 갱신한다.
계약기간 중에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나 기관장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,이 경 우 기관장이 해지할 시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.
- ② **계약목적**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보호자는 시설물이용과 맞춤형서비스 를 제공받으며 이에 상당한 자부담비용과 비급여비용을 대가금부함을 계약목적으 로 한다.
- ③ 입소보증금은 수납하지 아니하며 2008년 7월1일 이후의 기존 시설 생활자의 입소 보증금도 보호자에게 반납해야함을 직원 및 보호자에게 홍보한다.
- ④ 입소자의 **월 이용료**는 수급자 등급별 기준 총 급여액에 대한 일반은 20%, 차상위 계층 해당자 12% 또는 8% ,의료급여수급권자(기초생활수급자)는 무료로 한다.
자부담 비용외의 수급자부담금으로는 비급여항목중 식재료비로 하며 식재료비의 한 끼당 식사재료비는 1,500원으로 하되 변경할 수 있다.
월이용료의 변경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절차로는 임의 추출한 보호자의 사전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후 시설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회부하여 결정한다. 결정 후에는 비용의 청구방법,정산,청구시기등을 지 체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한다.
- ⑤ **신원 인수 인계자**인 보호자는 보호자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시설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외의 급여중 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청 할 수 있다.
신원 인수 인계자는 일반의료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아 니하여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,시설에 납부할 비 용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 시설에서 수급자를 병원 으로 응급이송한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를 참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⑥ 상기 5항을 위배시에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상호 **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** 할 수 있다. 또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개인의 형편상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,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위약을 한 경우 외 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.
- ⑦ **계약만료나 유효기간만료시에는 상호협의하에 갱신**을 신청하며 갱신이 완료된경우 에는 재계약을 체결한다.
- ⑧ 계약체결 후 기관은 장기요양급여계약을 공단에 통보한다.